



사 단 법 인 한 국 권 투 위 원 회
KOREA BOXING COMMISSION

경 기 계 약 서

본 계약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대한민국의 _____ 프로모터와
_____ 국적의 _____ 선수 사이에 체결되었고
다음과 같이 서로 합의한다.

1. 경기명

2. 장소 / 날짜 : _____ / _____

3. 상대선수 / 체중 : _____ / _____

4. 대전료 : _____

5. 출전 선수는 프로모터나 KBC의 지시에 따라 경기 전 홍보를 위해 필요시 합리적인 시간에 참석하는 것에 동의하며, 필요시 진단서를 제시하고 질병이나 부상을 숨기지 않는다.

6. 출전 선수는 다음과 같이 검진 및 계체량에 대한 KBC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.

- 1) 경기 글러브는 한국권투위원회 KBC에서 승인하는 8온스 또는 10온스 글러브를 사용한다.
- 2) 출전 선수가 첫 번째 계체량에서 계약 체중의 3%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재 계체량을 할 수 없으며 계약된 복싱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.
- 3) 출전 선수의 중량이 계약 체중의 3%이하를 초과하면 그 선수에게 2시간의 감량 기회가 주어진다. 출전 선수가 2시간 후 두 번째 계체량을 할 때 계약 체중을 초과하면 그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. 그러나 프로모터가 시합 조건을 재협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. 이때 출전 선수가 계약된 중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종 계약 중량의 500g 이하를 초과할 경우, 출전 선수는 자신의 경기 대전료의 30%를 상대 선수에게 지급해야 하며, 그 선수는 계약 글러브보다 2온스 추가된 글러브를 착용해야 한다.

7. 모든 선수는 의무적으로 KBC의 경기 전 건강검진을 통과해야 하며 만일 통과하지 못할 경우,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.

8. 경기 개최 07일 이내에 경기 출전을 취소한 선수는 상대 선수에게 본인의 대전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.(정당한 부상 및 기타의 다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 시에는 의무적으로 지급한다.)

9. 모든 선수는 항상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경기에 출전해야 하며 이는 출전 선수의 매니저 및 소속 관장이 보증해야 한다.

10. 경기의 승인 및 주관을 담당하는 복싱 커미션 KBC와 경기를 주최하는 프로모션은 경기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모든 종류의 링 사고(혼수상태, 사망 등) 및 선수의 부상 발생에 따른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출전 선수와 소속 매니저 및 관장은 이를 인지, 동의함을 선언하고, 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출전한다.

11. 그 이외의 규정

1) 프로모터는 경기 개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회 한하여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.

단, 경기 개최의 무기한 연기 및 취소 시 모든 계약 선수 각각 총대전료의 50%를 지급해야 한다.

2) 프로모터는 모든 출전 선수의 총 대전료를 경기개최 14일 전까지 KBC에 예치하며, KBC는 이를 경기 후 각 출전 선수에게 지급한다.(현금 또는 계좌이체) 단, 특별히 KBC가 인정하는 경우 프로모터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.

3) 선수와 매니저, 소속 관장은 KBC에서 공지한 스포츠안전재단의 전문체육인상해공제(보험)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한다.

당사자는 서면으로 작성된 날, 본 계약을 자발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며, 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.

선 수 명 : _____ (서 명)

법정대리인 : _____ (서 명)
(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)

관장(매니저)명 : _____ (서 명)

프로모터명 : _____ (서 명)

※ 본 계약서는 양도를 불허하며 4부를 작성하여 선수, 매니저, 프로모터, 한국권투위원회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
※ 본 계약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서명이나 확인이 있어야 한다.

※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서명이나 확인이 있어야 한다.

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 (승 인)